

# 서 면 답 변 서

2025. 9.

법 제 처

## - 목 차 -

### I. 김기표 위원

1. 법령해석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노력 필요 ..... 2

### II. 박은정 위원

1. 국외현장학습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아닌 국외교육여비 ..... 4

### III. 서영교 위원

1.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인건비 ..... 6

### IV. 이성윤 위원

1. 법령해석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노력 필요 ..... 8  
2.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내실화 필요 ..... 9

## V. 장경태 위원

|                                      |    |
|--------------------------------------|----|
| 1. 법령해석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노력 필요 .....     | 11 |
| 2.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내실화 필요 .....   | 12 |
| 3. 인건비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3 |
| 4. 기관운영기본경비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4 |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5 |
| 6. 법령심사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6 |
| 7. 법제정비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7 |
| 8. 행정법제 혁신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8 |
| 9. 법제업무정보화추진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 19 |

**김기표 위원**

## VI. 주진우 위원

|                                       |    |
|---------------------------------------|----|
| 1. 법령해석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노력 필요 .....      | 21 |
| 2. 내실 부족한 시각화 자료에 투입되는 예산 시정 필요 ..... | 22 |

## I. 김기표 위원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유권해석'이라 하며, 법령해석 업무는 법제처의 주요 기능임. 처리 및 회신을 감소 추세로, 법령해석의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 법령해석의 회신을 및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 다만, 민원인 등의 법령해석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안건도 증가하여 회신율이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법령해석 절차·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법령해석 요청 안건에 대한 적극적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반려율을 줄이고 회신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일관된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한 안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법령해석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 II. 박은정 위원

법제처는 매년 일반수용비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임. 국내장기교육사업 일반수용비, 국외교육여비의 예산요구(확정)안과 예산당국이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검토하여 제출할 것

- ☐ 확정되지 않은\* 교육훈련자에 대한 경비를 미리 편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외교육여비가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반수용비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 편성 시점(8월)에서는 국내장기교육 부처별 배정 인원이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

- ☐ 예산당국에 국외교육여비 편성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6년 법제처 예산안에 국외교육여비를 편성하였는바,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6년 국내장기교육비 및 국외교육훈련비 예산 요구안 및 확정안

(단위:천원)

| 구분                       | '26년 예산 요구안 | '26년 예산 확정안 |
|--------------------------|-------------|-------------|
| 국내장기교육비[(210-01] 일반수용비)  | 27,000      | 27,000      |
| 국외교육훈련비[(220-03] 국외교육여비) | 38,000      | 38,000      |

## 서영교 위원

### Ⅲ. 서영교 위원

일반사업인 법령심사지원 사업 등에서 인건비(보수)로의 전용을 통한 집행은 총액인건비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법제처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1년부터 인건비 불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24년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증액편성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인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운 위원**

#### IV. 이성운 위원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법령해석에 대한 요청은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처리·회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법령해석의 회신율 및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 다만, 민원인 등의 법령해석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안건도 증가하여 회신율이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법령해석 절차·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법령해석 요청 안건에 대한 적극적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반려율을 줄이고 회신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일관된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한 안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법령해석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식화를 통한 정보제공이 용이한 대상 법령·조문 선정을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개선 필요

- ☐ '25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개발 대상 법령·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선 사항>

- 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콘텐츠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령 선정
- ② 개발 대상 조문의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조회 실시
- ③ 콘텐츠화 필요성이 큰 조문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40개→80개)

- 콘텐츠 개발 용역 진행 단계에서도, 용역기관의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 더불어, '21년 ~ '24년 개발한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 V. 장경태 위원

법제처는 조직의 주요 기능이자 정부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법령해석의 회신율 및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법령해석의 회신율 및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 다만, 민원인 등의 법령해석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안건도 증가하여 회신율이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법령해석 절차·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법령해석 요청 안건에 대한 적극적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반려율을 줄이고 회신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일관된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한 안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법령해석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취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콘텐츠별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할 필요

- ☐ '25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개발 대상 법령·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선 사항>

- 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콘텐츠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령 선정
- ② 개발 대상 조문의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조회 실시
- ③ 콘텐츠화 필요성이 큰 조문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40개→80개)

- 콘텐츠 개발 용역 진행 단계에서도, 용역기관의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 더불어, '21년 ~ '24년 개발한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총액인건비 내 이전용을 지양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 '21년부터 인건비 불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24년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증액편성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함으로써 총액인건비 내 전용을 최소화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외현장학습 경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편성 후 수시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이전용으로 인해 국회 예산심의 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비목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외현장학습 경비와 관련하여 국외교육여비 편성 필요성을 예산 당국에 꾸준히 설명하고 편성을 요청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 예산 안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예산당국에 국외교육여비 편성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적극 설명하여 '26년 법제처 예산안에 국외교육여비를 편성하였는바,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법령의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미나의 경우 생활 법령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 선정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중전에는 두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였으나,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5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많은 콘텐츠를 중요 콘텐츠로 선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적시에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26년 법제처 예산안에 관리자 시스템 재구축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 이를 통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콘텐츠나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법령입법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편중된 자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입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앞으로 자문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더욱 적합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 법령입법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상반기 법령입법지원 수요를 늘려 자문료 집행\*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5년 상반기 자문료 집행률 : 41.2%

□ 법령입법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반영비율이 동 사업의 실효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법령입법지원이 이루어진 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거나 당초 입법추진계획이 철회되는 등의 사유로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법령입법지원원은 부처의 법령입안 시 법적 쟁점의 신속해결과 함께, 각 부처의 외부 자문비용 절감 등에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령입안단계부터 법제심사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입법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 문장정비 사업은 문장 구조를 읽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법령문의 가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4년 문장 정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81.8%의 응답자가 정비안이 현행 규정보다 쉽다고 응답

※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나누어 정비한 사례(「도로교통법」)

| 현 행                                                                                                                                                                | 정비안                                                                                                                                                                                                           |
|--------------------------------------------------------------------------------------------------------------------------------------------------------------------|---------------------------------------------------------------------------------------------------------------------------------------------------------------------------------------------------------------|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u>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u> 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u><br>1. 사업용 자동차 운전 <u>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u> :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br>2.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 문장정비는 내용 변경 우려로 인해 일괄 정비 등을 통한 단기간의 대대적인 정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①정비 대상 법령의 개정 수요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소관 부처 및 법제처 담당심사자(법제관)에게 문장정비 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부처협의안 및 입법예고안 검토 제도'를 '25년 3월부터 새로 도입하고, ②법제업무평가 지표에 문장정비 실적을 추가하는 등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정비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총 40개의 정비 완료 과제 중 17개가 올해 7, 8월에 정비되었음.

○ 문장정비 사업이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정비 과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은 타 연구용역보다 평균 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2~3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된다는 점, 소관 부처에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영향분석 수행 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국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 다른 연구용역과는 달리 실태분석 및 국민인식 조사가 필요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분석 등이 요구되므로 다른 인문 사회 분야 용역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 또한, 분석 결과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처에 정비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법령 소관 부처의 정책결정부터 법령안 입안, 정비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분석대상 법령의 개선과제를 충실히 발굴하고, 개선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2024년도 도출된 8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정비 완료되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관련 2개 과제는 의원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의안번호 제2208313호, 제2211135호)입니다.

법제처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강구

□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ISP를 수립('24)하였습니다.

□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 도입,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운영 등 AI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26~'28)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

### Ⅵ. 주진우 위원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법령해석에 대한 요청은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처리·회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법령해석의 회신율 및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 다만, 민원인 등의 법령해석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안건도 증가하여 회신율이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법령해석 절차·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법령해석 요청 안건에 대한 적극적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반려율을 줄이고 회신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일관된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한 안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법령해석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 편집이나 불필요한 그림 삽입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 하도록 개선 필요

- '25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개발 대상 법령·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선 사항>

- 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콘텐츠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령 선정
- ② 개발 대상 조문의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조회 실시
- ③ 콘텐츠화 필요성이 큰 조문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40개→80개)

- 콘텐츠 개발 용역 진행 단계에서도, 용역기관의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더불어, '21년 ~ '24년 개발한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화 필요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